

###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율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율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율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새마을사업등의지원율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7호”를 “제1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단서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로 하고, “제1호”를 “제1호 및 제8호”로 하며, 동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 및 토지

동조 제2항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 제1호 제8호”로 하고 동항 나 호중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충청북도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새마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 등이라 한다.)
제2조(면제대상) ①제1호 및 제7호에 계기하는 취득과 등기, 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2호 내지 제5호에 계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내지 제5호의 경우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 또는 연면적에 대하여는 따로이 과세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이 과세하며, 제7호의 경우	제2조(면제대상) ①제1호, 제7호 및 제8호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제1호 및 제8호

현 령	개 정 안
<p>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는 따로 과세한다.</p> <p>1-7. (생략)</p> <p><u>(신설)</u></p> <p>②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p> <p>가. (생략)</p> <p>나.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개발을 한 경우(이하 생략)</p> <p>다. (생략)</p> <p>제3조-제5조 (생략)</p>	<p>-----</p> <p>-----</p> <p>-----</p> <p>-----</p> <p>1-7. (현행과 같음)</p> <p>8.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 및 토지</p> <p>② -----</p> <p>----- 제1항 제1호 및 제8호 -----</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주택개발(신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p> <p>-----</p> <p>다. (현행과 같음)</p> <p>제3조-제5조 (현행과 같음)</p>

## 참 고 자 료

○ 지방 세 법 (부 분 발 취)

○ 내 무 부 준 칙

## 지 방 세 법 (부분발취)

제 7 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 8 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 9 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1992.12.12  
내부  
정리. 성실하게 봉사한다  
부

우 110-760 / 서울 중포구 세종로동 77번지 전화 791-2510 전송

문서번호 세계 22670-99  
시행일자 1992.03.12.( )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발신	내성외관	지	
일자	1992.3.12	시	
번호	592	결	
처리과	신규계 1492	지	
담당자		공	
		발	

제목 지방세 과세면제신청증 기정금액 환의 시달

정부의 농어촌육성정책사업 추진상의 필요 및유사한 정책사업간 세계지원의  
 영영유지를 위하여 각도에서 기정액가산결산 "세마을사업지원금지원금세면제금액"과  
 공업,농업,항공개발의 학도면민에게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증기, 인화,  
 항공기에 대하여는 세계지원이 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의 근거가 없이 해양개발의 학도면민에게 부담이 되는 "학도면민의교육용재산에  
 대한과세면제금액"에 대하여 기정금액을 마땅 지방세법 제80조에 의한 허가액 감축  
 하여 면제과 같이 시달하니 수면금액을 기정액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 첨부 : 1. 00도(군)세마을사업지원금지원금(군)세마을사업지원금기정금액(환의)  
 각 1부.  
 2. 00시도(시군구)학도면민의교육용재산에대한시도(시군구)과세면제금액  
 중기정금액(환의) 각 1부. 받.

내 부 부 장

수신처 : 나 01-06, 10-18.

과 관 전 결



○○도새마을사업지원에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준칙)

조례명중 “새마을사업지원”을 “새마을사업등의 지원”으로 한다.

제 1 조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 2 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7호”를 “제1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단서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로 하고, “제1호”를 “제1호 및 제8호”로 하며, 동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 및 토지

동조 제2항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 제1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 (나)호중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조례명 : ○○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사업 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면제대상) ① 제1호 및 제7호 에 개기하는 취득과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2 호 내지 제5호에 개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를 면제한 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사업 시행이 전의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적 또는 연면적에 대하여는 따로이 과 세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이 과세하며, 제7호의 경우는 새로이 취 득한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합계</p>	<p>조례명 : ○○도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 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새마을사업, 농 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오지개 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 한 다)</p> <p>제2조(면제대상) ① 제1호, 제7호 및 제8호</p> <p style="text-align: right;">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호 및 제8호</p>



현	행	개	정	안	안
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	.....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중 농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	②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	②.....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
액에 대하여는 따로이 과세한다.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
가. (생략)	.....	나.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나. ....	가축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신축, 개축 및 개량
가. (생략)	.....	나.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나. ....	주택개량을 한 경우(이하생략)	주택개량(신축
가. (생략)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제3조-제5조(생략)	및 개축을 포함한다)
가. (생략)	.....	제3조-제5조(생략)	제3조-제5조(현행과 같음)	.....	.....
.....	.....	.....	.....	.....	.....